



1회용컵 보증금제 이대로 좋은가

2022년 9월 30일(금)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이수진(비)·이학영·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준) 김정호·양이원영·김성주·김영배 의원
한국환경회의

주관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이수진(비) 의원 · 한국환경회의

1회용컵 보증금제 이대로 좋은가

- 좌초 위기에 놓인 1회용컵 보증금제가 나아갈 방향 -

PROGRAM

10:00 ~ 10:10	내빈 소개
10:10 ~ 10:20	환영사
10:20 ~ 11:00	사회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 발제 1. 1회용컵 보증금제 유예 결정의 문제점 박지혜 변호사 사단법인 플랜 1.5 2. 자원순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 방향 유미화 상임위원장 녹색소비자연대
11:00 ~ 11:40	토론 1. 허승은 녹색연합 팀장 2. 이미현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3.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 4. 김남희 환경부 1회용품대책추진단 팀장
11:40 ~ 12:00	종합토론
12:00	폐회

1회용컵 보증금제 이대로 좋은가

- 작스 위기에 놓인 1회용컵 보증금제가 나아갈 방향 -

CONTENTS

환영사	김영진 국회의원	06
	이수진 국회의원(비례)	07
	이학영 국회의원	08
	전용기 국회의원	09
	양이원영 국회의원	11
발 제	1. 1회용컵 보증금제 유예 결정의 문제점	13
	박지혜 변호사 사단법인 플랜 1.5	
토 론	2. 자원순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 방향	19
	유미화 상임위원장 녹색소비자연대	
토 론	1. 허승은 녹색연합 팀장	25
	2. 이미현 녹색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29
	3.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	33
	4. 김남희 환경부 1회용품대책추진단 팀장	39



김영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안녕하십니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영진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1회용컵 보증금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귀한 시간을 할애해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를 올해 12월부터 제주와 세종 지역 내에서 먼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두 곳의 시행 결과를 토대로 제도 확대 이행계획안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환경부 발표에 전국 확대 시기와 로드맵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교차반납의 원칙이 제외되는 등 당초 계획보다 축소되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다회용컵 사용 확대를 장려하여 재활용을 촉진하려는 제도의 진정한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1회용컵 보증금제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1회용컵 보증금 제도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역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서 제안해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1회용컵 보증금제도의 성공적 안착 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을 보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9월 30일
국회의원 김영진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안녕하십니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먼저 오늘 긴급토론회를 공동주최하신 의원님들과 한국환경회의와 소속 단체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발제와 토론, 좌장을 맡아 주신 전문가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윤석열 정부가 6월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던 ‘1회용컵 보증금제’를 법률을 위반해 12월에 시행하겠다고 미루더니, 지난주에는 세종과 제주 지역만 MOU를 통해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법으로 정한 시행일을 위반한 것을 넘어, 법률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도는 연간 250억 개, 카페·음료점에서만 60억 개가 사용되고 있는 1회용컵이 큰 환경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법률로 정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를 통해 사용한 컵의 회수율을 높이고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것은 당면과제인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환경을 지키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어떠한 이해관계도 환경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보다 우선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1회용컵 보증금제가 미뤄지고 있는 과정을 보면, 환경부가 환경을 지키는 일보다는 정부 여당의 정치적 이해관계만 바라보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 모여 논의하는 소중한 자리인 만큼, 허심탄회한 토론으로 1회용컵 보증금제가 올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좋은 대안들을 많이 제안해주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모든 단체와 관계자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9월 30일
국회의원 이수진(비례)



이학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군포시 국회의원 이학영입니다. <1회용 컵보증금제 이대로 좋은가 - 좌초 위기에 놓인 1회용컵 보증금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토론회를 개최해주신 김성주·김영배·김영진·김정호·양이원영·이수진·전용기 의원님과 한국환경회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토론회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김영진 의원님과 한국환경회의 관계자 여러분께는 특히 더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주신 내외빈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23일 환경부가 1회용 컵보증금제를 일부지역에만 시행한다고 발표하면서, 1회용 컵보증금제 시행을 준비해오던 많은 이들을 당황케 했습니다. 정부 스스로 법률에 명시된 시행일을 어긴 것은 물론이고, 대상 지역도 임의로 축소됐습니다.

2020년 법 개정 이후 2년의 준비기간이 있었지만,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여 시행을 유예하고도 법에 담긴 내용대로 시행하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준비과정의 문제점과 향후 시행을 위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때에, 이렇게 긴급 토론회가 열리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주시는 말씀들을 귀담아듣고, 1회용 컵보증금제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과 참석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9월 30일
국회의원 이학영



전용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용기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 이번 토론회에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분들과 토론회에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로 높아지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자원 낭비 감축은 전 세계적인 정책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일회용품의 경우 사용 전체를 규제하는 나라들을 시작으로, 소비를 줄여 자원 효율을 높이는 시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우리나라도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춰 지난 2020년,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1회용컵 보증금제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아쉬운 점이 없다 할 순 없지만,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큰 걸음을 내딛는 사회적 합의의 이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회에서 완성된 사회적 합의를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무시했습니다. 국회가 법률로 정한 시행일을 임의로 6개월 연기함으로써 편법적인 시행령 정치를 넘어, 이제는 직무유기 소지가 다분한 위법·불법 정치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뿐만 아니라 이 합의에 관심 가져주셨던 국민의 뜻마저 짓밟는 행위입니다.

정부의 느닷없는 연기 탓에 피해입은 건 라벨지를 구매한 선량한 점주들이었습니다. 그 피해를 보상한답시고 정부가 국민 혈세로 라벨지를 환불시켜주는 촌극마저 벌어졌습니다. 어이없는 촌극이 일어난 지 채 100일도 되지 않았는데, 정부는 또다시 법과 민의를 짓밟고 제도에 손장난을 치고 말았습니다.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특정 지역에 한정해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막무가내 위법행정의 끝이 어딜지 의심될 지경입니다.

두 차례의 위법행정으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는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대로 뒀다가는 1회용컵 보증금제의 정상 시행조차 막막한 상황입니다. 다시금 국민과 국회가 뜻을 모아 1회용컵 보증금제의 방향을 짚고 길을 마련해야 합니다.

오늘의 이 자리가 환경부의 위법행정과 시행 예정인 제도의 허점을 명확히 짚고 앞으로 어떻게 보증금제를 시행·보완해낼 것인가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토론회에 함께해 주신 모든 관계자와 참석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2022년 9월 30일
국회의원 전용기



양이원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반갑습니다!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이원영입니다. 미룰 수 없는 순환경제의 주요과제인 1회용컵 보증금제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환경부는 오늘 12월 2일부터 세종, 제주 지역에 한해 1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6월 10일 시행 예정된 1회용컵 보증금제가 6개월 미뤄진 것도 모자라 시작마저 반쪽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전국 시행 일시조차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아 앞으로 얼마나 확대될지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시행되었던 1회용컵 보증금제도는 2008년도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1회용컵 보증금제도를 통해 1회용컵 매장 판매량이 50% 줄었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도가 폐지되면서 오히려 1회용컵 사용량이 증가하고 불법 투기, 쓰레기 증가로 인한 처리비용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수도권은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고 발생지처리원칙을 수립하여 쓰레기 처리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1회용컵 사용을 점진적으로 줄여 포화상태인 쓰레기 매립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적으로 제도를 준비해야 합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자원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정책 과제입니다. 쓰레기 처리비용은 줄이고 수거 사업, 재활용 사업 등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가 창출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재활용에 용이한 재질 및 구조가 개발되는 등 기술개발까지 그 영역이 확대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1회용컵 보증금제는 순환경제로 나아가는 길목에 선 첫 과제입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1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 준비 과정에서의 문제를 진단하고 순환경제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서 뜻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9월 30일
국회의원 양이원영



1회용컵 보증금제 이대로 좋은가

- 짝조 위기에 놓인 1회용컵 보증금제가 나아갈 방향 -

발제1

1회용컵 보증금제 유예 결정의 문제점

박지혜 변호사 | 사단법인 플랜 1.5

1회용컵 보증금제 유예 결정의 문제점

Plan 1.5

사단법인 플랜 1.5
박지혜 변호사
jeehye@plan15.org

한국의 자원순환 정책의 흐름

	1980년대	1990~2000년대 초반	2000년대 중반~
목표	안전처리	재활용	자원순환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관리법」(198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1992년)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1992년)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1995년)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200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2007년) • 「자원순환기본법」(2018년)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 • 폐기물처리업 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치금·부담금제(1992년) • 분리배출의무화(1992년) • 수출입폐기물허가제(1992년) • 과대포장규제(1994년) • 쓰레기종량제(1995년) • 생산자책임재활용제(2003년) • 순환골재사용 의무화(200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물 직매입금지(2005년) • 수출입폐기물 신고제(2008년) • 전기전자제품 환경성보장제(2008년) • 음식물쓰레기종량제(2012년) • 재활용환경성평가(2016년) • 폐기물처분부담금, 자원순환성과관리(2018년)

지현영 (2022. 6. 15.) 포장-배달 일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법률 검토, 법무법인 지평

Plan 1.5

1회용컵 보증금제도 도입 논의

- '02년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 (패스트푸드 업체, 커피전문점) '08년 폐지
- '18년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통해 제도 도입 발표
- '20년 자원재활용법 개정을 통하여 1회용컵 보증금제 법제화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0년 6월 2일 19:09 이후부터 보도하며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당자	차량승조종객관리	이재은 과장 / 044-201-7301	1회용 컵 사용량 수는 2008년 1회용 컵 사용량
	환경정책팀	김지은 과장 / 044-201-7301	
배포일시	2020. 6. 2 /		

1회용 컵 보증금제, 2022년 6월 시행

- ◇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 ◇ 역시 개정 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화 법률 개정안

□ 환경부(장관 조영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법)' 개정안이 6월 2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날 의결된 방안은 1회용 컵 보증금제를 도입해 개발 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커피전문점 등에서 용품을 위해 일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을 필자로 하여,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 보증금은 300원이고, 정해진 용도 등을 사용한 경우 50% 돌려준다.
- 지난 2002년에 관련 업계와 자발적 협약으로 추진했다가 2008년에 폐지된 이후 14년 만에 법제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89.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 (환경부)

□ 과제목표

- 대량생산 폐기로 이어지는 선형경제를 벗어나, 생산·유통·소비·재활용 전과정에서 폐기물 감량 및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확대하는 순환경제도 진화

□ 주요내용

- (생산양 제업)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자원낭비 및 폐기를 발생 감축
 -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22년 6월) 등 1회용품 사용감량 지속 확대
 - 가치가 높은 폐기물은 순환자원으로 의정하여 폐기물 단계별 격차, 소비자의 수리권 보장 등을 담은 '순환경제전환촉진법' 제정(22년)
- (회수·연변 고도화) 분리는 줄이고 재활용 효과는 높이는 회수·연변 고도화
 - 선별이전에 정확 선별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공선별장 확대(2021. 600개)
 - 국민 배출·관리 편의 제공을 위해 매스징투장, 의외설의 등에 1회용컵 분리회수기 설치
- (고부가가치 재활용) 분진 등은 탄소소재, 재생원료로 활용 사용하고, 복합재질 등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은 열분해하여 원료로 활용
- 폐배트 등 플라스틱 제형원료 사용 의무화(배트 1만2천년 이상 생산량 5%)
- 폐유라스틱을 원부소재로 적용·화학적원료, 수소연료로 재활용 허용, 공공영문처리시설 10개소 시공 추진

Plan 1.5

1회용컵 보증금제 유예 (및 부분 시행) 결정 과정

- 2020. 6. 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개정법률안 공포
 - 1회용컵 보증금제는 시행일을 2년 후로 유예
- 2022.1.24.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1.25~3.7.)
 - 1회용컵 보증금 개당 300원 부과
- 2022.2.24.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 지정 및 처리지원금 단가 제정고시안 등 행정예고(2.25.~3.7.)
 - 커피, 음료, 제과제빵 등 79개 사업자와 105개 상표(브랜드) 대상(시행령 제17조 제3항)
 - *총 3만 8천여개 매장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
 - 1회용 컵에 대해 적용되는 환불문구 및 재활용 표시에 대한 방법과 규격 마련
 -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규격, 재질, 인쇄면적 등 1회용 컵의 표준용기에 대한 기준 마련
- 2022.5.5. 1회용 컵 보증금 반환 간편합니다... 현장 시연회 개최 (환경부 보도자료)
- 2022.5.20.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관련 환경부 입장(환경부 보도자료)
 - 1회용컵 보증금제의 시행을 2022년 12월 1일(목)까지 유예
- 2022.9. 22. 12월 2일부터 세종·제주서 '1회용컵 보증금제' 첫 시행(환경부 보도자료)
 - “선도지역에서의 성과를 보아, 제도 확대 이행계획안(로드맵)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

Plan 1.5

부분 시행 결정에 대한 의문

환경부		보도자료		<i>각시 도약의 영랑사자 힘여 장사 중의 사자</i>		
보도 일시	2022. 5. 23. (수) 14:00	배포 장소	2022. 5. 23. (수)			
담당 부서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 (1차관관대리주관)	연락처	전화	044-201-7343	팩스	044-201-2414
		연락처	사무관	홍경호	044-201-7382	

1회용 컵 보증금제, 12월 2일부터 제주시 전면 시행

- 1회용컵 감량과 다회용컵 확대의 지렛대 역할
- 환경부(장관 윤화섭)는 9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보증금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제도 추진방안과 가지원행사를 발표했다.
- 먼저,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시기는 예정대로 올해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한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1회용컵 없는 플라스틱 성 구역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이번 제도가 년동계 쓰레기과 몸심을 앓고 있는 제주도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된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 세종특별자치시는 중앙부처 등 다수의 공공기관이 입주한 지역으로, 공공이 앞장서 1회용컵을 감량하면서 컵 회수·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 중심도시'로 발돋움한다는 구상이다.
- 정부는 세종시 내 공공기관에 별도의 회수계계를 갖추지 못한 '보증금제 미적용 1회용컵' 반입 제한을 권고하여 이번 제도의 인하여 힘을 내하기로 했다.
- 선도지역에는 소비자들과 함께 제정에 강화된 제재(인센티브)가 제공된다.

□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제도 시행이 한 번 쓰고 버려지는 1회용컵의 감량과 다회용컵 사용 확대의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선도지역에서의 성과를 보아, 제도 확대 이행계획안(로드맵)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왜 "갑자기" 부분 시행인가?
- 앞으로의 전국적 로드맵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 성과가 없다면 하지 않을 것인가?

Plan 1.5

1회용컵 보증금제 전면적 시행에 대한 국가의 책임

- 1회용컵의 회수와 재활용은 물론이고 발생 자체를 줄이자는 관점에서 생산자의 책임을 촉구하고, 국가가 재활용 촉진을 위한 공공인프라 구축에 대한 책임을 이행할 필요

의안 번호	제 2022-3 호	의결 안건
제정 날월일	2022. 5. 18.	

1회용 컵 보증금제대상사업자에 대한 지원안

제정자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 위원장 홍동근
제정날월일	2022. 5. 18.

Plan 1.5

□ 보증금대상사업자 대상 지원안: 총 86억 원

이행부담	지원방안
• 보증금 카드수수료 : 9.5%*(9,200억*1%) = 28.2억원	• 보증금표시 리벨비 지원 - (규모) 67억원 - (내용) 라벨 단가(7원) 전액 지원 : 9.5억개 X 7원 = 66.5억원
• 적리지원금 보강기전제 : 9.5%*(9,200억*10%) = 44.5억원	- (방법) 비율 보조
• 보증금 등 인쇄비 지원 : 14억개*(1원*4.5%) = 6.3억원 + 이자 : 334.2억*(1.5%연준 기준) = 200억 + 12월(5월)상환금(1.19%)	• 알력보조 지원 - (규모) 6억원 - (내용) 소비자 안내, 회수업 장려 등 : 5억개 X 2만(60원) X 2만원 = 60억
• 라벨 부착, 컵 보관관리 등 노동절감	- (방법) 인건비 지원
	• 반환할려금 지원 - (규모) 15억원 - (내용) 교차반납 활성화를 위해 판매량 대비 반환량이 많은 매장에 할려금 지급 : 9.5억개 X 30% X 5원 = 14.3억
	- (방법) 비율 지원(적리지원금 지원)

□ 기타 비용: 미반환보증금 총액 내

구분	지원방안
• 공공장소 무인회수기 등 설치 운영(21억원) ※ (무인회수기) 지역별, 서비스형, K&A형 등 시범사업 운영(20년 50개, 2023년 100개) 기준 연평균 100개 설치, 10개소 설치 및 신규 10개소 설치	
• 소비자 판매자용 모바일 앱 개발 개선(16억원)	
• 홍보영상 제작 송출, 온-오프라인 홍보(58억원)	
• 시스템 구축 운영 연구조사 상담센터 확대(6~30개) 및 기타 관리비 등	

자원순환 및 1회용품 절감의 중요성



ARTICLE
European Union: Ban on Single-Use Plastics Takes Eff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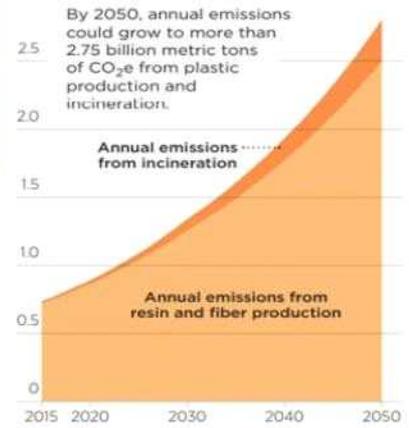
RECYCLING
Europe is implementing a tax on plastic

California passes first sweeping US law to reduce single-use plastic

China Unveils Five-year Plan to Ban Single-use Plastics

Annual Plastic Emissions to 2050

3.0 billion metric tons



Source: CIEL

Plan 1.5



1회용컵 보증금제 이대로 좋은가

- 짝조 위기에 놓인 1회용컵 보증금제가 나아갈 방향 -

발제2

자원순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 방향

유미화 상임위원장 | 녹색소비자연대

긴급 국회토론회_1회용 컵 보증금제 이대로 좋은가 (2022.9. 30)

자원순환 / 녹색경제 / 지속가능한 소비생산사회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

- 1회용 컵 보증금제를 중심으로 -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상임위원장 유 미 화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1.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의 궁극적 목적과 목표

2.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위해 약속한 시간과 준비된 정도

3. 1회용 컵 보증금제 관련 정부/기업/시민사회의 갈등과 협력

4. 9월 22일, 1회용 컵 보증금제 선도지역 우선 시행 발표 이후

2022년 환경부 국정과제



과제목표

대량생산-폐기로 이어지는 선형경제를 벗어나, 생산·유통·소비·재활용 전과정에서 폐기를 감량 및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확대하는 순환경제로 전환

선형에서 순환으로

주요내용

발생량 저감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자원낭비 및 폐기를 발생감축**
 -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등 1회용품 사용감량 지속 확대
 - 가치가 높은 폐자원은 **순환자원으로 지정**하여 폐기를 규제를 제외, 소비자의 수리권 보장 등을 담은 「순환경제전환촉진법」 제정(22년)

회수·선별 고도화

불편은 줄이고 재활용 효과는 높이는 회수·선별 고도화
 - 선별시설에 광학 선별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공선별장 현대화('26년, 62.6%)
 - 국민 배출·반환 편의 제고를 위해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등에 1회용컵 무인회수기 설치

고부가가치 재활용

품질 좋은 플라스틱은 **재생원료로 의무 사용**하고, 복합재질 등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은 **열분해하여 원료로 활용**
 - 페페트 등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페트 1만톤/년 이상 생산자 등)
 -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하여 석유 화학원료, 수소연료로 재활용 허용, 공공열분해시설 10개소 확충 추진

바이오가스 확대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 하수슬러지 등은 통합하여 바이오가스 생산(22년 유기성폐자원법 제정, 26년까지 최대 5억Nm³/년 생산)

기대효과

생활플라스틱 발생량 20년 160만톤 → 25년 20%감량
 매패과 소각 중심에서 열분해 방식으로 전환(열분해율 20년 0.9% → 26년 10%)

현재 1회용 관련 정책은?

1. 1회용품 사용량 증가에 대한 정책 대응..**사용억제와 무상제공금지** (22. 11. 24~)

2. 1회용 컵 **보증금제**와 관련된 정책 대응 **선도지역** 우선 시행 (22. 12. 2 ~)

[진단 및 질문]

- 1회용품 **사용후 처리**에 대한 대응
- 사용자(원인자) **부담금 부여** (무상제공금지, 보증금)
- **미사용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 1회용품 **생산규제**에 대한 대응은?
- 1회용 컵 **보증금제** **선도지역**의 **이행 준비(지자체, 해당사업자, 지역주민)** 정도는?
- 1회용 사용 줄이기 정책의 이행 점검, 평가, 보완을 위한 **논의**는 누가? 어디서?

1회용 컵 사용을 줄여가는 성공사례와 시도

- 매장내 1회용 컵 사용 금지
- (No!플라스틱) 일회용 컵 대체하는 친환경 프라이부르크컵
https://ytn.co.kr/_ln/0105_201810160221519425/2018.10 (영상)
- 독일의 친환경 도시 프라이부르크에서는 시 전체 카페의 70%가 일회용컵 보증금 서비스 '프라이부르크 컵'에 동참하고 있으며, 반납율은 85%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울산방송(UBC)은 도들이 컵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지역 카페 협의, 시민 참여, 컵 제작 등의 전과정을 정규방송인 '필(必) 환경시대의 지구수다' 프로그램으로 방송, 캠페인을 지속해 참여 카페를 늘려 나갈 계획이다. (<https://www.fetv.co.kr/news/article.html?no=114750/22.5>.)

1회용 컵 보증금제, 2020년 부터 지금까지

- 시간도, 우수한 사례와 시도도 있었다.

전면시행을 위해서 무엇을 더 검토하고, 준비해야 했을까?

- 2020년 6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개정으로 도입
- 2022년 2월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위한 고시 및 공고 제개정안 행정예고
- 대상사업자, 보증금액, 처리지원금, 표준용기, 환불문구 등
- 자발적협약사례 (10개월운영/종로구 등 14개브랜드, 206개 매장)
- 지역별 설명회 계획
- 2022년 6월 1회용 컵 보증금제 12월 2일로 유예
- 2022년 8월-9월 4차에 걸친 이해당사자 간담회 (환경, 소비자, 프랜차이즈, 점주대표, 환경부)
- 2022년 9월 22일 1회용 컵 보증금제 선도지역 우선 시행 발표

선도지역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에 '전제'되어야 할 조건

1. **자발적 협약의 활동 사례 결과**가 분석되어, 본 사업추진에 기초자료로 제공되었는지?
(10개월간, 14개 브랜드, 206개 매장, 3개자치구)
2. 1회용 컵 보증금제 **선도지역 시행에 대한 운영기간, 활동평가기준, 결과에 따른 정책**
3. 2개 선도지역이라는 **축소발표된 1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되는 동안 보완/검토되어야 할 내용이 준비되어야 한다.**
 - 타지역(지자체/지역주민등)에서는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어야 할까?
 - 프랜차이즈본점, 점주대표들은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에 대비해 준비를 어떤 일정으로 해야 할지?
 - 전면시행을 위해 검토되어야 할 법규정, 시행령등은 어떤 것이 있을지?

1회용 컵 사용줄이기 '목적' 달성을 위한 제안

1.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준비하고, 역할 분담해야**
 -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로 **선도지역 확대시행**, 다양한 성공사례 창출
제주시(관광지 특성), 세종시(공공기관), 울산시(방송사와 함께), 종로구/중구/서대문구
 - 공공기관 참여
2. (텀블러)인센티브와 1회용 컵 보증금(부담금)의 **차이**를 크게, **소비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선순환 유도**
3. 음료 판매점의 **테이크아웃시** 이용되는 1회용 컵, **동일 기준/방법 적용**
(시행방식의 **단순화/시행범위의 지역화**)
4.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운영** (전국/특광역시/ 기초지자체/ 읍면동)- **제도시행/점검/보완**
5.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녹색소비문화운동** (언론참여/국민참여 캠페인)





함께 하는 작은실천

녹색소비자 10%를 향하여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의 높이가
우리사회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사람과 자연을 함께
살리고, 회복시키는
희망을 만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 이대로 좋은가

- 작조 위기에 놓인 1회용컵 보증금제가 나아갈 방향 -

토론 1

허승은 팀장 | 녹색연합

1회용품 보증금제 유예 영향과 개선방안

허승은 녹색연합 녹색사회팀 팀장

1. 윤석열 정부 인수위 시절부터 우려된 자원순환 정책

- 코로나19 장기화로 전 세계적으로 일회용품 사용량 급증함. 우리나라의 2020년 폐플라스틱류 발생량은 전년 대비 19%, 발포수지류 14%, 비닐류 9% 증가해 플라스틱과 1회용품 사용량 감축 필요성이 높아짐. 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이 도출되었고, 이는 국제사회의 플라스틱 문제를 공식 규제를 선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이와 같은 국내외적으로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매장 내 일회용품 규제에 따른 과태료 유예(2022.4.1.), 1회용품 보증금제 시행 유예(2022.5.20.) 함. 이는 <플라스틱과 1회용품 줄이기>의 정책 방향과 어긋나 국정과제 이행에 대한 우려가 커짐.

2. 제도 유예로 인한 정부 신뢰도 하락

「행정기본법」 제8조

-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행정기본법」 제38조 제1항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등을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거나 그와 관련된 활동을 할 때에는 헌법과 상위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되며, 헌법과 법령 등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1회용품 보증금제 시행일은 자원재활용법 부칙 1조 단서에 따라 2022년 6월 10일 임. 환경부는 법률을 개정하지 않은 채 임의로 판단해 시행을 유예함. 이후 12월 2일로 예정된 제도 시행 지역도 축소함. 1회용품 보증금제 시행 유예 결정이 타당했는지, 시행하지 않은 근거와 절차를 확인해야 함. 녹색연합은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했고, 감사원은 감사 진행 여부를 검토 중임.

3. 1회용컵 보증금제,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주요 설문조사 결과>

●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 조사 결과 (2022.3)

- 타브랜드 반환에 대해 응답자 약 60.6%가 ‘일회용 컵을 더 쉽게 반환할 수 있으므로 반환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다’라는 답변을 함.

● 한국리서치 조사결과 (2022.3)

- 1회용컵 보증금제는 원활한 이용을 위해 50%의 응답자가 반납처 증가가 필요하다고, 미반환보증금은 무인회수기 설치 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에 46%가 응답함.

● 국민권익위원회 설문 결과 (2020.5)

- 컵 보증금제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정책 방향에 대해 “반납 및 환불 절차의 편리성 31.6%”, “개인 컵 텀블러 사용시 가격 할인 혜택 24.8%” “컵보증금제 필요성 홍보, 시민의식 전환 촉구 등 노력 필요 19.4%” 순으로 응답함.

○ 교차반납 허용 필요

- 컵 회수는 원칙적으로 커피 판매점에서 책임져야 함. 1회용컵 보증금제는 사업자에게 보증금 반환과 재활용 책임을 부과해 회수와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임. 구매 브랜드에서만 반납이 허용되는 것은 1회용컵 보증금제 실패 요인으로 지적된 바 있음. 컵 반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브랜드가 다른 커피전문점에서도 반납이 가능해야 함.

○ 미반환보증금 사용에 대한 지침 필요

- 자원재활용법 15조의 5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를 운영, 미반환보증금에 대한 사항을 협의·조정해야함. 현재 제도 시행에 따른 비용을 모두 미반환 보증금으로 지원함으로써 원인자부담원칙으로 일회용컵 판매자의 책임이 미부과됨. 현재 환경부는 소비자의 미반환보증금으로 라벨비, 보증금 카드수수료, 처리지원금 지원뿐 아니라 라벨 디스펜서와 1회용컵 간이 회수지원기 비용 지원한다고 발표함. 가맹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미반환보증금이 많아져야 하고, 이는 곧 소비자의 반환이 줄어들어야 하는 상황이 됨.

○ 프랜차이즈 본사 책임 강화 필요

- 1회용컵 보증금제는 급증한 1회용컵 사용에 따른 자원 낭비, 환경오염 심화를 개선하기 위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데 큰 의미가 있음. 제도 시행 주체인 프랜차이즈 본사는 시스템 (판매정보관리시스템) 구축조차 하지 않았고 당시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업체 중 시스템을 구축한 곳은 3곳에 불과했음.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에 컵, 냅킨 등 모든 소모품을 판매하면서도 보증금제도의 핵심인 라벨 구매와 컵 반환 등의 일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긴다는 비판이 컸음.

일회용컵 판매 이익은 본사가 가져가고 제도 운용의 불편함과 비용은 자영업자들이 책임지도록 했다는 점에서 프랜차이즈 본사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음. 프랜차이즈 본사는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함.

○ 표준용기 의무화

- 1회용컵 보증금제의 취지는 일회용컵 회수와 재활용률 향상을 목적으로 규격이 통일되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회용컵 사용을 지정해 사용해야 하며 이에 대한 벌칙이나 강제조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최근 플라스틱 사용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해외의 경우 플라스틱 제품 시장 출시 금지나 재활용 의무화 비율을 지정하고 있어 1회용컵 보증금제 컵에 대해 표준용기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자원재활용법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음.

4. 이후 과제

-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로드맵 제시해야 함.
- 환경부는 선도사업에서의 일회용컵 감량 목표, 1회용컵 보증금제 평가 지표를 준비해야 함.
- 환경부는 선도사업 외 지역에서의 표준용기 전환과 재활용 프로세스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함.
- 환경부의 자원순환 정책의 방향과 과제는 명확함. 이미 여러 해에 걸쳐 자원순환 정책 로드맵을 마련해왔음.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2018.5), 1회용품 줄이기 로드맵 (2019.11),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2020.12), 탄소중립 이행계획(2021.3), K-순환경제 정책(2021.12)에 제시된 과제를 이행하는 것이 지금 해야 할 일임.



1회용컵 보증금제 이대로 좋은가

- 작조 위기에 놓인 1회용컵 보증금제가 나아갈 방향 -

토론 2

이미현 사회경제1팀장 | 참여연대

1회용컵보증금제, 가맹본사의 명확한 책임분담이 필요하다

이미현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1. 가맹점주들의 가장 큰 우려는 책임전가

- 독일, 스웨덴 등은 플라스틱 용기 재활용률이 80% 이상이고 전세계적으로 플라스틱 규제는 확대 중에 있음. 반면 우리나라는 매장내 1회용컵 규제를 완화하고, 1회용컵 보증금제를 연기하는 등 국제적 추세와는 역행하고 있음.
- 가맹점주들의 1회용컵보증금제 실시에 대한 우려는 무엇보다 가맹본사의 비용부담까지 사실상 가맹점주에 전가할 것이라는 걱정에 기반함. 이러한 우려는 기본적으로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가, 그 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이해해야만 온전히 납득할 수 있음.
- 가맹본부는 결정하고,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결정사항을 현장에서 실행하는 원하청 관계
-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간 상생을 위한 협력이 당연하지만 그동안 가맹본사는 매출 확대를 위해서 사실상 종속관계에 있는 가맹점주들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양상을 보여왔음.

2. ‘갑’ 가맹본사의 ‘을’ 가맹점주에 대한 불공정 행위 사례

- 가맹·대리점 본사의 갑질 횡포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만이 아님. 지난 2013년 한 대리점주에 의해 남양유업 본사 측의 물량밀어내기와 폭언이 폭로된 이후, 약 10여년 동안 수많은 가맹·대리점주들이 갑질 횡포로부터 벗어나고자 몸부림 쳐왔음.
- 언론을 통해 그동안 드러난 갑질횡포 피해사례만 해도 일반의 상식을 뛰어넘는 경우가 많음. 점주가 다른 경로를 통해 구할 수 있는 물품을 더 비싼 가격에 강제로 납품받도록 하고 꼭 필요하지도 않은 물품을 필수물품으로 지정해 강요하는 것은 물론, 인테리어비나 광고비를 떠넘기는 사례는 너무나도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갑질 불공정 행위에 문제제기를 하는 점주들을 사찰하고, 부당하게 계약해지를 하거나 보복, 협박을 일삼는 2차 가해도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임. 가맹점주 협의회에 대한 보복조치나 불이익행위도 서슴지 않는 등 본사의 이해에 반하는 조직적인 활동에 대해 위력을 행사해 왔음.
- 공정거래위원회의 2021년도 가맹 분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맹본부와의 거래 과정에서 부당한 거래를 경험했다고 밝힌 가맹점주 비율은 39.7%임. 특히, ▲가맹본

부가 예상 매출액에 관한 정보 등을 과장하여 제공(13.3%)하거나, ▲가맹본부가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13.0%)하는 등의 부당한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가 많았음.

가맹본사의 가맹점주에 대한 부당·불공정 행위 유형 예시

① 식용유, 일회용 숟가락 조차 비싸게 본사로부터만 구입하여야 하는 현실. 폭리에 항의하자 가맹계약 해지

- 바르다김선생의 경우 본사로부터만 구입하도록한 필수물품이 전체품목의 3분의2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식용유, 일회용 숟가락 등 일반 공산품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본사는 이들을 본사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요하여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체 매출액에서 원부자재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이 48%를 넘었고 분식집 월 매출이 4,000만원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가맹점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 이에 가맹점주가 단체를 결성하고 항의하자 가맹본부는 점주단체 대표 및 주로 활동한 3명에 대해 가맹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였습니다. 법원도 이 부당성을 인정하고 간판을 철거하라는 가맹본부의 가처분 소송청구에서 점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bhc의 경우에도 본사가 기성품 튀김유(고올레인산 해바라기유)를 공급하면서, 가맹점주가 그 품질에 준하는 튀김유를 시중에서 직접 구입 가능함에도 필수물품으로 지정하여 불합리하게 고가로 매입하도록 강제한 사례로 시민단체가 공정위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② 빛 좋은 상생협약... 비웃는 가맹본사, 구경하는 공정위

- 피자헛은 가맹점주와 분쟁을 하다가 지난 2015년 10월 상생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맹본사는 이를 준수하지 않다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준수를 요구하는 가맹점주 단체 회장을 비롯한 3명의 가맹점주를 부당하게 해지하였습니다. 역시 법원도 이 부당성을 인정하고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이 과정에서 가맹점주들은 2015년 5월 경 공정위에 가맹본사의 부당성을 신고하였으나 1년이 넘도록 강 건너 불을 보듯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공정위인지, 공정거래질서란 무엇인지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③ 물류비 폭리 저항에 가맹점주 고소

- 피자에땅 구월점은 부부가 몸이 상해 입원을 해야 할 정도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원가대비 30 ~ 35%라던 매출이익은 가맹본사의 저가할인 정책으로

두 판의 원가가 40 ~ 50%가 넘는 관계로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매출이익입니다. 여기에 매년 오르는 물류비용과 지역 주민들이 붙이지도 못하게 하는 전단지 인쇄물 구입 강제 등으로 본사의 8년차 노예의 삶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 그러던 중 2015년 3월 가맹점주단체가 만들어지고 부회장으로 활동하자 본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했고 이에 항의하며 그 부당성을 알리자 명예훼손죄로 고소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했지만 가맹본사는 “왜 전 재산인 점포를 걸고 본사에 대항하는 점주협회 임원활동을 했냐”고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 대다수의 가맹점주들은 갑을관계에서 오는 가맹본사의 불공정 행위를 겪는다고 봐야 함. 카페 가맹점들도 예외는 아님.
- 할리스, 엔제리너스, 카페베네, 이디야, 톨앤툼스 등 5개 국내브랜드 커피전문점에 대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재개장(renewal) 인테리어비용을 일방적으로 강요한 사례 등 불공정행위 등이 알려져 지난 2012년 공정거래위가 이를 대대적으로 조사하고 (주)커피핀그루나루와 (주)해리스에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각각 시정명령을 의결했음. 허위·과장정보 제공, 가맹금 미예치, 정보 공개서 미제공 행위, 계약서 사전제공 의무 위반행위 등에 대해 지적받음.

3. 가맹본사의 책임분담이 1회용컵보증금제 성패의 열쇠

- 1회용컵보증금제가 환경단체와 중소기업 사이의 갈등 구도로 가서는 안됨. 오히려 가맹본사의 책임과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어야 마땅함. 소비자도, 매장주도 쓰레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해 부담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으나 가맹본사의 사회적 책임은 상대적으로 덜 요구받고 있음.
- 가맹비와 각종 필수물품 비용, 높은 상가임차료, 플랫폼 비용까지 구조적 문제로 현재 상인들이 겪는 어려움은 결코 무시할 상황이 아님. 코로나19 기간 동안 영업을 중단하거나 거리두기로 인해 대폭 매출이 감소되었어도 빚내서 버티는 상황이 계속 되었음. 최근에는 고물가로 인한 부담으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은 더욱 심화되고 있음.
- 가맹본사가 책임을 명확히 분담하는 방식이 아니고서는, 본사가 자신들의 분담 비용도 필수물품 등에 포함시켜 결국 가맹점주에게 전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결코 과장이 아님. 따라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가맹본사들의 책임과 부담의무를 부여하도록 해야 1회용컵보증금제 실시를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협력하에 추진할 수 있음.
- 나아가 가맹본사 뿐만 아니라 배달 플랫폼의 성장세와 시장 내 영향력을 고려하여 이들의 책임도 끌어내는 방안에 대한 고려도 필요함.



1회용컵 보증금제 이대로 좋은가

- 짝조 위기에 놓인 1회용컵 보증금제가 나아갈 방향 -

토론 3

고장수 이사장 |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 고장수입니다.

물과 기름과 같이 섞이지 않을거라고 생각하는 환경단체와 저희가 이렇게 한자리에서 한 목소리를 내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하고도 명확합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도’의 온전한 시행입니다.

저희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은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환경부와 18차례의 회의를 진행해오면서 첫 회의의 자리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도’의 시행을 전제로 논의를 하겠다고 회의에 참석한 환경부 관계자들에게 공표하고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18차례의 회의를 진행하면서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의 입장과 우려를 충분히 전달하였고, 서로 합의점에 이르지 못한 결과를 놓고는 추후 수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양보하고 타협하며 환경부, 환경단체, 소비자단체와 세부사항까지 조율을 마쳤습니다.

카페사장님들의 입장에서는 세부 조율사항중 상당부분을 양보하며 비용적, 육체적, 정신적 손해까지 감수해가며 동참과 시행의 의지를 보여드렸고, 이렇게 결정한 결정적인 이유는 전국시행과 사각지대없는 시행을 전제로 한다는 대전제가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환경부에서도 전국시행과 사각지대없는 시행을 실시한다고 약속하였으며, 12월 2일 ‘1회용컵 보증금제도’의 시행은 100개이상 프랜차이즈 38,000여곳을 우선 시행하되, 사각지대 업종에 속하는 편의점, 무인카페, 개인카페 등 커피를 판매하는 모든 형태의 업장을 포함시키는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하였으나, 이 모든 약속을 뒤엎어버리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 한정하여 실시한다는 내용을 저희에게 아무런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환경단체, 소비자단체, 카페사장들까지도 동참하고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를 관리/감독하는 정부부처인 환경부에서는 어떠한 이유로 부분적 시행을 결정하고 강행하는지? 여기에는 어느곳의 어떠한 입김과 외압이 있었는지?

그것도 아니라면 환경부가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무능한건지?

정부부처인 환경부가 전세계적 이슈인 탄소중립과 자원재활용에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싶고 되묻고 싶습니다.

저는 전국의 카페사장들을 대표하는 단체장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에게 죄를 지은 것 같아 마음이 아프고 밤에 잠이 오질 않습니다.

이분들은 무슨이유로 공정하지도 않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이 ‘1회용컵 보증금제도’를 받아들이고 시행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제주와 세종 지역에 국한한다고 치더라도 왜? 그안에서 또 프랜차이즈와 비프랜차이즈로 나누어서 시행을 한다는건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환경부에서는 늘 입법사항, 입법의 어려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법이란 기본적으로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는거 아닐까요?

저는 이러한 이유로라도

환경부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책임과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환경부와 프랜차이즈 본사에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환경부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도’의 전국시행 및 사각지대 없는 시행을 위해 조속히 로드맵을 구성하여 발표해주길 바랍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도’의 구체적 시행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입장에서만 귀기울일 것이 아니라,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길 촉구합니다.

또한, 지금 발표된 지원 및 인센티브는 전국시행을 전제로 논의된 내용이기에, 제주와 세종으로 그 범위가 축소되었을 경우는 지원 및 인센티브를 더 강화하여 제주와 세종의 카페사장님들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는 저희와 논의할 때마다 현재 비용기보증금의 미회수 반환금 425억원을 ‘1회용컵 보증금제도’에 포함되는 사장님들을 지원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한다고 하였으나, 9월 27일 저희가 환경부, 세종시청과의 미팅 자리에서는 전국시행을 전제로했던 지원 및 인센티브 이외에는 추가로 지원이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습니다.

물론, 이 금액은 소비자가 지불하고 찾아가지 않은 소비자의 돈이기에 무작정 가맹점주들에게 지원을 하라고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환경부는 이해관계자들이 불만없이 시행할 수 있게끔 성의와 노력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중 86번째로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등 인센티브 강화로 범국민 생활실천 확대를 한다고 선언했으나, 어떻게 지원없이 희생만을 강요하는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에게 카페는 생존권이고 삶의 전부이자 터전입니다.

예산이 없다면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도’를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하지 말고, 이 제도가 지속가능하고 확대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선도적 시행지역인 제주와 세종의 사장님들에게 충분하고도 집중적인 지원은 당연히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1회용컵 보증금제도’는 전국의 100개이상 프랜차이즈 38,000여곳이 대상이었으나, 제주와 세종지역의 프랜차이즈로 한정되었습니다.

현재의 시행령 안에서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역할은 미미합니다.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다고해도 무방합니다.

이는 환경부와 18차례의 회의를 거치면서 프랜차이즈 본사의 역할을 저희 카페사장님들이 가져옴으로서 많이 양보했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안정적인 ‘1회용컵 보증금제도’의 운영을 위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소규모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지원과 협력이 필수라는걸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프랜차이즈 본사는 책임은 빠지고 혜택만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폐기물 부담금의 혜택’입니다.

저는 이부분에 있어서 자원재활용법 15조의2 2항에 나와있는 폐기물 책임의 주체가 판매자에서 프랜차이즈 같은 형태의 경우에는 가맹본사가 주체가 되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환경부에서 협조나 요구를 할시에 항상 이래라 저래라 하는건 월권이라고 하면서 소송도 불사한다고 환경부를 압박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도’에서 프랜차이즈 본사는 제주와 세종지역의 자사 가맹점 사장님들에게 컵가격 또는 물품의 가격을 인하 해줌으로 상생을 위해 노력한다는 작은 성의라도 보여야 하며, 이게 프랜차이즈 본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 이대로 좋은가

- 작조 위기에 놓인 1회용컵 보증금제가 나아갈 방향 -

토론 4

김남희 팀장 | 환경부 1회용품대책추진단

MEMO

MEMO